

안전 20-08



제1장: 전기 재해예방 제2장: 직장내 성희롱예방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기술안전(주)

K T S K O R E A T E C H N O L O G Y S A F E T Y C O . , L T D .

산업안전·보건 소식지

1. '인천 화학공장 폭발사고... “잘못 주입한 화학제품 빼내다 폭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화학제품 공장 탱크로리 차량 폭발사고는 저장소에 잘못 주입한 화학약품을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7월 22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1일 저녁 8시51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화학제품 생산업체 에스티케이(STK)케미칼 공장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 1명도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숨진 40대 남성은 현장 수색 중 주검의 일부만 발견됐다. 폭발 여파로 주검 일부가 산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공장 관계자는 경찰에서 “과산화수소를 넣는 공장 저장소에 수산화나트륨을 잘못 주입했는데, 이를 다시 빼내려고 20t 탱크로리 차량에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산화나트륨과 탱크로리 차량에 실린 화학물질이 반응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을 벌였으며,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2차 감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작업과정에서 공장 관계자 등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한겨레= 이정하 기자]

2. '고용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식사고 예방대책 추진'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오페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위험수준을 등급화(고·중·저)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한다. [안전신문= 김두희 기자]

3. '평택 쌍용차 50대 노동자 사망원인 “프레스 오작동”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생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프레스 기기에 머리가 끼여 숨진 사건의 원인은 프레스 센서 오작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쌍용자동차는 16일 “프레스 2공장 6라인에서 김아무개(54) 씨가 프레스 기기에 깔려 숨진 것은 조사 결과 프레스기 센서 오작동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15일 낮 12시40분께 프레스 2공장 2라인의 프레스에 끼인 채 발견됐다가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거쳐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철판 금형을 찍어내는 프레스기에서 작업 중 이물질이 끼여 장비 작동이 멈추자 직장인 김씨가 이물질 제거를 위해 프레스기를 점검하던 중 센서 오작동으로 프레스기가 내려오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숨진 노동자는 1987년 쌍용자동차에 입사해 33년간 근무했으며 6라인 직장을 맡고 있었다.

쌍용자동차는 “프레스기 점검 과정에서 센서가 물체를 감지하지 못해 오작동 하게 된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규명을 위해서 장비 보수 점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홍용덕 기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겨레=이정하 기자]

안 전 교 육 실 시 명 단

순번	이름	서명	순번	이름	서명	순번	이름	서명
1			26			51		
2			27			52		
3			28			53		
4			29			54		
5			30			55		
6			31			56		
7			32			57		
8			33			58		
9			34			59		
10			35			60		
11			36			61		
12			37			62		
13			38			63		
14			39			64		
15			40			65		
16			41			66		
17			42			67		
18			43			68		
19			44			69		
20			45			70		
21			46			71		
22			47			72		
23			48			73		
24			49			74		
25			50			75		



정기교육일지

담당	부서장	대표

일자 : 20 년 월 일

사업장명 :

교육 대상	1. 정기(전사원)안전교육 ② 기타(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인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대상 인원				
	참석 인원				
교육 시간	: ~ : (시간)				
교육 구분	1. 집합 2. 개인 3. 위탁 4. 기 타()				
교육 장소	1. 강의실 2. 회의실 3. 작업장 4. 기 타()				
교육 방법	1. 강의식 2. 시청각 3. 현장교육 4. 기 타()				
교육 과 목	제2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근로자 정기교육과 별도로 실시해야 함)				
교육 내용	<p>1.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21</p> <p>2.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와 조치 21 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 바. 직장내 내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와 기타 행위로 분류</p> <p>3.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와 조치 25 가. 사업주 의무</p> <p>4.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 28 가.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마.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노력</p> <p>5. 사업주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32 가.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p> <p>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5</p> <p>■ 성희롱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별지1호), 성희롱 고충 신청서(별지2호) ⇒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사건 처리절차 동영상(402MB, mp4, 19분, 2020년) ☞ 예방교육통합관리>교육자료실>교육분야별>성희롱>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다국어 리플릿(인니, 몽골, 영어, 중국, 베트남) ☞ 다음카페 다문화자료실 http://안전보건.한국/ ⇒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 다음카페 각종 법령집 http://안전보건.한국/</p>				
강 사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본 교육 교안은 한국기술안전(주)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제공하는 성희롱예방 교재입니다.

안 전 교 육 실 시 명 단

순번	이름	서명	순번	이름	서명	순번	이름	서명
1			26			51		
2			27			52		
3			28			53		
4			29			54		
5			30			55		
6			31			56		
7			32			57		
8			33			58		
9			34			59		
10			35			60		
11			36			61		
12			37			62		
13			38			63		
14			39			64		
15			40			65		
16			41			66		
17			42			67		
18			43			68		
19			44			69		
20			45			70		
21			46			71		
22			47			72		
23			48			73		
24			49			74		
25			50			75		

제1장 전기재해 예방

1. 전기의 특성

가. 현대생활에서의 전기

전기는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로 전기가 없으면 하루라도 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 사용 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 (1) 전기는 형체, 소리, 냄새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곳(충전부)을 외관상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다.
- (2) 전기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이 아주 빠르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대피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나. 전기의 성질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하는 전기적인 위치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물이 흐르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라면 전류는 기전력(起電力)이라는 힘에 의해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길을 전기회로라 하며 이는 물이 흐르는 수로(水路)에 대응된다.

그리고 전류에 의하여 에너지를 공급받는 장치를 부하(負荷)라 하고, 이것은 물에 의해 돌게 되는 물레방아에 대응된다.

전류는 발열, 자기, 화학 등 3가지 작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전기기계기구들은 이 3가지 작용을 응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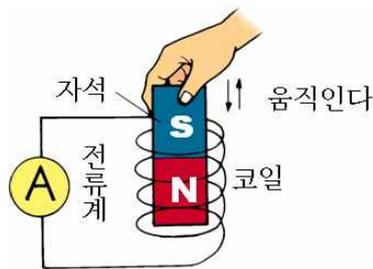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전기의 성질은

- (1) 발열작용: 모든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발열작용에 의해 발생한 열은 전등, 다리미, 전기히터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 (2) 자기작용: 전기가 내는 힘의 작용을 응용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전자석 또는 전동기의 기본원리가 된다.
- (3) 화학작용: 물의 전기분해나 전기도금, 건전지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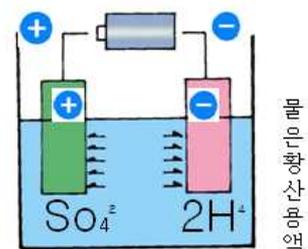
이러한 전기의 성질을 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많은 이득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상태 즉, 누전(절연파괴) 등이 발생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화재, 감전)을 하게 된다.



(발열작용)



(자기작용)



(화학작용)

2. 전기의 위험성

1879년 프랑스에서 교류 250v에 목수가 작업 중 감전 사망한 것이 인류 최초의 감전사망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8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분석에 따르면 감전으로 인하여 부상자가 385명, 사망자가 18명 발생하였다.

가. 대표적인 전기재해의 발생형태

- (1) 피복이 벗겨진 상태의 전선이나 전기설비에 직접 접촉되는 경우
- (2) 스파크, 아크로 인한 화재, 화상을 입거나 비산물로 인해 시력이 장애되는 경우
- (3) 사용중 정전이 된 경우 갑자기 전원이 투입되어 회전부에 말려들어 신체 절상, 창상 등
- (4) 기기의 결함 등으로 누전된 전기설비의 외함, 철 구조물에 접촉되는 경우
- (5) 고전압 부위에 인체가 근접되어 공기의 절연파괴로 감전 화상을 입는 경우



3. 전기 안전점검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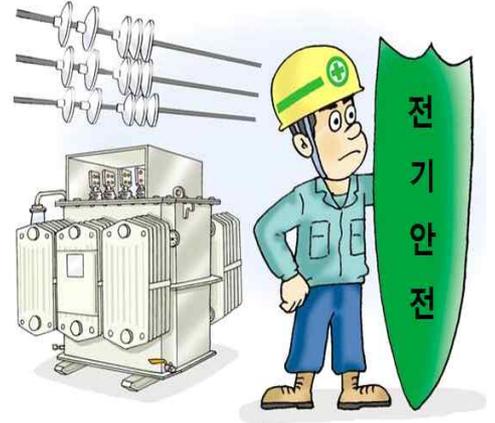
가. 점검계획수립·준비

- (1) 점검자는 반드시 작업관계책임자의 협조하에 점검을 실시한다.
- (2) 작업관계책임자는 점검시의 안전을 확보 하기위해 감독하고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 (3) 점검에 착수할 때는 전원차단 보호구착용 및 점검구역과 출입구역을 로프 표시 깃발표시 막대 등으로 구획하고 점검범위를 정한다.

나. 복장 및 안전용구

- (1) 복장은 가볍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단추가 떨어진 작업복 헐렁한 복장 징이 박혀있는 구두 슬리퍼 등은 피하며 마른 목장갑과 절연모를 착용하고 특히 절연장화를 신는다.
- (2) 점검에 필요한 플라이어 나이프 드라이버 스패너 등의 공구는 벨트 공구함에 수납하여 휴대한다.
- (3) 반지 손목시계 특히 금속밴드가 달린 손목시계 등은 반드시 벗고 작업한다.

- (4)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고압용절연장갑, 전기용절연장화, 절연모, 방호기구고무관, 고무판, 공구·재료, 흑막대, 표지, 로프, 단락접지용구, 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등을 항상 준비하여 손상이나 열화의 유무를 사전에 점검한 후 사용한다.
- (5)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에 임할때는 보호구를 착용한다.
- (6) 빗줄기 속에서 사용한 흑막대는 반드시 닦아서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 (7) 흑막대, 전기용절연장갑 그리고 절연대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양호한 절연상태를 유지시킨다.
- (8) 부주의 또는 실수로 활선부분에 닿지 않도록 방호고무관 고무판 등을 사용한다.



다. 점검시의 안전

- (1) 점검은 2명 이상이 하고 1명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에 역점을 둔다.
- (2) 순회점검 시에는 내장기기 부품에는 손을 대지 말고 육안점검으로 하여 접촉위험을 방지한다.
- (3) 순회점검할 때에는 운전중에 문을 개폐하지 말고 외관점검 계기지시 점검으로 한다.
- (4) 전동기 등을 정지하고 큐비클(Cubicle) 내부를 점검할때는 ① 투입금지' 라는 표지판 부착 ② 차단기를 개방 ③ 단로기를 개방 ④ 잠금장치설치 ⑤ 점검실시 등의 순서로 한다.
- (5) 정기점검 수리 등에서 큐비클(Cubicle) 이면판 등을 분리 할때는 주머니안에 있는 것을 꺼내고 완장 시계 등을 벗어 이물질이 내부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 (6) 정기점검 수리 등에서 큐비클(Cubicle) 이면판 등을 분리 할때는 떨어져서 부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7) 부하측 기기를 점검할 경우에는 단로기를 열고 큐비클(Cubicle)에는 '조작금지' 라는 표지판을 걸고 작업을 시작한다.
- (8) 중량물을 들어올린 그 밑에서는 절대로 작업하지 않는다.
- (9) 세척하기 위해 휘발성 오일을 사용할 때에는 주위5m 이내를 「화기엄금」으로 한다.
- (10) 시너 도료 등을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환기를 충분히 한다.
- (11) 기름에 의한 오염은 신속히 청소한다.
- (12)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 할때에는 반드시 작업대를 설치하되 절연모를 착용한다.
- (13)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상부와 하부를 고정하고 미끄럼 방지를 하며 가능한한 작업보조원을 두고 하부를 확보한다.
- (14) 공구나 물건을 던져 올리거나 던져 내리지 않는다.
- (15) 이동식사다리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지 말고 기기의 돌기부분을 발판으로 삼지 않는다.



4. 전기 사용 시의 안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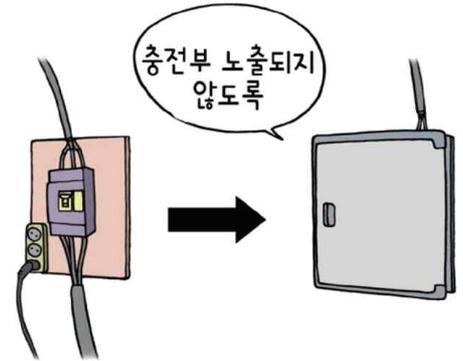
가.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의 노출 금지

전기기기나 배선의 충전부가 절연되어 있지 않으면, 충전부의 접촉에 의한 감전이나 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연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전기기기나 배선 자체는 물론이고 전선과 기기의 접속부분, 전선과 전선의 연결부분 등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용 테이프 등으로 충분히 절연시켜 주어야 한다.

만약 절연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충전부를 절연성 물질 등으로 덮어주어(충전부 방호)감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곳의 바닥을 절연처리 하거나 습기를 없애 건조하게 유지시켜 작업자의 충전부 접촉시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나. 절연상태 관리 철저

전선이나 전기기기 등은 절연피복이 벗겨지거나 구리(도체)가 노출되는 등 절연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만약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며 또한 전기기기 등은 정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표의 값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절연저항
400V 미만	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경우	0.1MΩ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0.2MΩ
	300V를 넘고 400V이하인 경우	0.3MΩ
400V 이상		0.4MΩ

(전기설비기준 제52조: 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제2117-26호)

▶ 이중절연구조 전동기계·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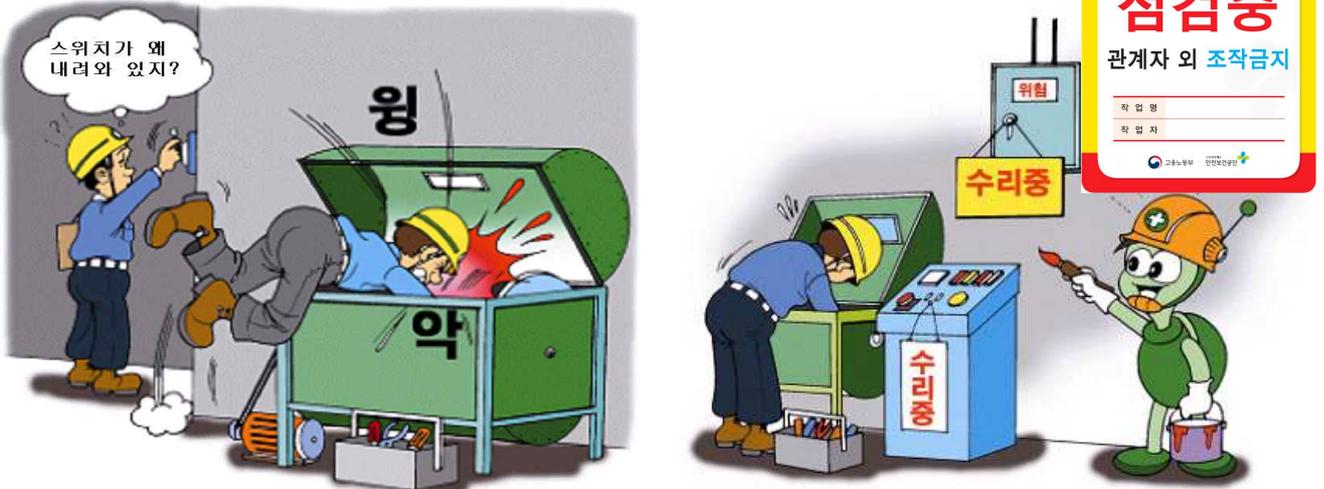
- 전동기계·기구가 이중절연구조로 된 것을 선택한다.

※ **이중절연구조란:** 전동공구 외함이 절연재로 제작되어 있고 내부 전기회로가 다시 한번 기능적으로 절연된 구조이다. 이와 같은 절연구조는 만약 한 개의 절연층이 파괴되더라도 또 다른 절연층으로 보호되어 있으므로, 감전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명판에(回)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다. 설비수리·정비작업

해당 설비 전원을 차단하고 개폐기에 잠금장치 및 수리중 표찰 부착, 충전여부 확인, 단락접지 실시, 필요할 경우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마치고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모든 작업자가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전원을 투입한다.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호)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의 장치·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② 제1항의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 ③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고정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라.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전기작업 시에는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용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절연용 보호구는 7,000V 이하의 전로에서 활선작업, 활선 근접 작업 등의 전기작업 시에 작업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기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이 있다.

마. 물기 있는 곳에서의 취급 금지

몸에 땀이 나 있거나 손이나 발이 물에 젖었을 때는 감전 재해가 일어나기 아주 쉽다. 따라서 전기기기를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마른 상태에서 조작해야 하고, 바닥에 물기가 있는 곳에서의 스위치 조작이나 전기기기 사용은 금해야 한다. 이러한 전기기기의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절연장화 등의 절연성 물질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바. 접지

접지는 접지선을 연결한 접지극을 땅속에 매설하여 누전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누설전류의 대 부분을 땅으로 흘려보내 기기 외함에 걸리는 전압을 감소시켜 감전재해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 ☞ 전기기기가 완벽하게 제조되고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전기에 대한 취급이 부주의하면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만약의 감전사고에도 안전하도록 해주는 것이 접지이며 접지하는 방법에는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나, 인근의 땅에 완벽하게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나 철골 등을 접지극으로 활용하거나,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이용하면 된다.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의 것
 -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 다. 금속으로 되어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배선관 등
 -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사.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는 냄새, 빛깔이 없기 때문에 옥내배선과 전기기구의 고장 등으로 누전이 된다 해도 발견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누전차단기를 부착하면 누전이 될 경우 자동적으로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전원측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감지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전류에서 인체를 감전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 ☞ 사용 중 누전차단기가 작동될 경우 반드시 누전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전원을 투입한다.
- ☞ 누전사고 시 누전차단기가 정상 작동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월1회 이상 작동 점검(0.03초이내 전원 차단)을 반드시 실시하고 부적합 시 교체하도록 한다.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 이하의 교류 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
-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 감도 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부하 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 암페어 이하로, 작동 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 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콤팩트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5. 이동식 전기기기 안전

가. 핵심 위험요인

- (1) 누전되거나 충전부가 노출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 (2) 작업시 비산물에 의한 시력장애, 회전부분에 말려들 등에 의한 절상, 창상, 절단 등의 위험이 있다.
- (3) 가연성 가스, 인화성 물질 또는 가연성 분진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작업시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

나. 안전작업 방법

- (1) 전동기기는 작업 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핸드드릴, 연삭기, 톱, 샌더 등
- (2) 절연저항계로 절연상태를 점검(2중절연구조 제외)한다.
- (3) 작업시작 전에 기기의 안전상태에 대해 점검한다.
 - 덮개, 스위치, 플러그, 회전부, 고정상태 등
 - 코드선의 피복손상, 접지선의 탈락유무 등
- (4) 작업장의 환경조건에 대해 점검한다.
 - 작업에 필요한 적정 공간 확보 여부, 작업에 필요한 조명유지 여부
 - 물, 습기 또는 철판 위 등 도전성 유무, 가연성 가스·인화성 물질·분진 등의 존재 유무
- (5) 전기기기의 전원 인출은 접지형 콘센트와 플러그를 사용한다.
- (6) 습하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습형, 방수형 등의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 (7) 전기기기의 배선 및 콘센트 등은 규격과 용량이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8) 전기기기의 보수 및 청소를 할 경우는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작업한다.
- (9) 이동형식이나 휴대형 전동기계·기구를 습한 장소 등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하고 접지를 한다.
- (10) 전동공구의 작업 시에는 느슨한 복장이나 면장갑 착용 등을 금한다.
- (11) 칩, 파편 등의 비산물이나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12) 젖은 손이나 젖은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는 전기기기 및 배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13) 정전 시나 작업 종료 시에는 전기기기 및 이동식전기기구 등의 전원을 차단해 둔다.
- (14) 가연성 가스, 인화성 물질 또는 가연성 분진 등을 취급하는 지역 등 화재·폭발 위험지역에서는 전기스파크, 기계적 마찰에 의한 불꽃 등이 발생하는 작업을 금지한다.
- (15) 이동전선은 충분한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콘센트에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한다.



6. 감전재해 시 응급처치

감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자와 구조자의 위험증대를 최우선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당황하지 말고 감전으로 인한 또 다른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재해자를 신속히 구출하여야 한다.

가. 전원의 확인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해자가 고장난 기기나 벗겨진 전선에 직접 또는 누전된 기기 등의 외함에 간접적으로 접촉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 접근하여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만 접근한다.



나. 재해자의 구출

재해자를 구조하기 전에 먼저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재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 후 재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원의 차단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 (1) 절연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재해자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된다.
- (2) 전기를 끊기 위해 플러그를 뽑거나 렌치 등으로 케이블을 절단하여 전기접촉을 차단한다.
- (3) 재해자를 전기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나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절연도구를 이용한다.
- (4) 고무절연장갑을 사용하여 재해자를 안전하게 끌어당긴다.
- (5) 로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재해자와 접촉하지 말고 발이나 팔 주위를 로프로 감아 끌어당긴다.



다. 재해자의 상태 관찰

감전사고에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감전되는 순간 심장 또는 호흡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흡상태·맥박상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 신속한 응급처치

관찰한 결과 재해자가 의식이 없다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즉시 인공호흡 및 119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흡정지시간(분)	1분 이내	2분 이내	3분 이내	4분 이내	5분 이내	6분 이내
소생율(%)	98	92	72	50	25	0
증상				뇌손상	식물인간	사망

7. 전기화재 요인 및 대책

전기는 기본적으로 전선이 회로를 구성하여 흐르게 되는데, 전선에 너무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르거나, 전류가 전선 밖으로 흐르게 되면 화재 또는 감전 등의 사고를 발생 시킨다.

전류가 전선 밖으로 흐른다는 것은 누전 즉 아크, 스파크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기에 의한 점화원은 다음과 같다.

가. 과부하 전류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줄열($H=I^2Rt$)이 발생되는데 발생한 열이 충분히 방열되면 발화의 위험이 없으나 열이 축적되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전선은 그 전선의 특성 및 사용조건에 따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결정되는데 이를 전선의 허용 전류라 하며 이 전류를 초과하여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을 과부하 전류라 한다.

(1). 발생 원인

- 정상 사용전류에 비하여 많은 양의 과전류가 흐르면 과열되어 출화
- 전원공급설비의 정격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대용량의 냉난방기 설치 시 배선이나 접속 기기 등이 과열되어 화재 발생
- 차단기 용량이 배선이나 부하용량에 비해 과다한 것을 설치
- 이동이 빈번한 전기기기의 배선은 굵힘과 펴짐 현상이 반복되어 전선의 일부가 끊어져 전기저항에 의해 국부적으로 발열 출화
- 문어발식으로 많은 전기기기 연결 사용으로 과부하에 의한 배선 및 접속부 발열에 의해 출화



(2) 예방 대책

- 부하용량에 적합한 배선기구 및 차단기 사용
- 냉난방기와 같이 부하용량이 큰 전기기기 설치 전에 배선 및 배선기구, 차단기 등의 정격용량을 검토
- 전기용접 시 접지 클램프를 반드시 모재에 견고하게 연결 사용
- 문어발식 전기기기 연결 사용 금지

나. 단락(합선)

(1) 발생 원인

- 전선의 피복이 외부의 충격으로 벗겨지는 등 절연이 파괴됨
- 이동전선에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져 두 가닥의 전선이 합선되어 접촉부분에 전류가 집중적으로 흘러 스파크 발생
- 전선의 피복이 과열에 의해 연소되어 발화
- 전등의 배선 또는 코드, 전등소켓, 콘센트 내의 배선 등의 피복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어 심선끼리 접촉
- 차단기, 개폐기 및 기타 전기기기가 설치된 곳에 빗물이 습기의 침입으로 전선간의 절연이 파괴되어 합선



(2) 예방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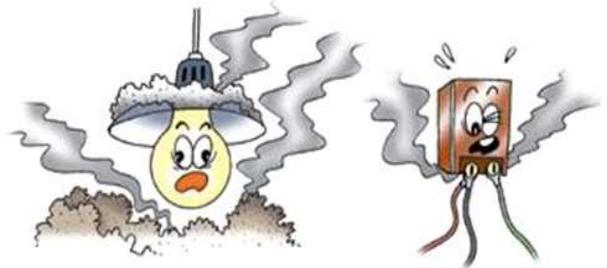
- 규격 전선의 사용 및 이동전선의 관리 철저
- 전등소켓, 콘센트 등의 전선 인출부를 보강
- 전기 작업 시 전원스위치 차단 후 실시
- 비닐형코드(VFF)는 옥내배선용으로 사용 금지
- 콘센트로부터 플러그를 뺄 때 플러그 몸체를 잡고 뺀
-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 및 배관, 모듈드 등을 사용하여 시공



다. 기기 발열

(1) 발생 원인

- 백열전등이나 할로겐전등 등 발열이 많은 전등 외벽에 가연성 먼지 또는 기타 가연물이 접촉하여 출화
- 전기기기의 설치 직후, 오결선에 의한 단락, 지락 또는 과부하에 의한 과열 출화
- 내용연수 경과로 노화, 기기 마모 등으로 전기기기 내부의 절연이 열화되고 과열 출화
- 전기기기 주변의 섬유먼지나 기타 분진 등으로 인해 전기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이 방열되지 못하여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 주변의 가연성 먼지에 의해 출화
- 전기밥솥이나 커피포트는 기기 내부의 온도조절장치 고장 및 내용물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작동 시 온도가 상승하여 소손
- 배기팬 주변의 먼지나 기름 찌꺼기 등에 의해 팬의 회전에 장애를 받을 경우 열이 발생



(2) 예방 대책

- 전기기기 주변에는 가연성 물품 보관 금지
- 백열전구 및 할로겐 전구는 가연성 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

- 전기밥솥이나 커피포트가 내용물이 없이 동작되지 않도록 주의
- 전기기기의 이상 발생시 전원 및 동작을 차단하는 보호장치가 내장된 전기기기 사용
- KS, 형식승인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의 사용 금지
- 전원의 결상, 역상 및 구동축의 구동으로 인해 오동작 및 소손의 우려가 있는 전동기에는 전자식보호계전기 사용
- 전기기기나 접속기기 주변의 먼지, 기름때 등은 정기적으로 제거



라. 누전

넓은 의미의 누전이란 마치 수돗물이 누수 되듯 전류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그 이외의 빠져나가는 현상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전선의 피복 또는 전기기기의 절연물이 열화되거나 기계적인 손상 등으로 인해 전류가 금속체를 통하여 대지로 흘러가는 현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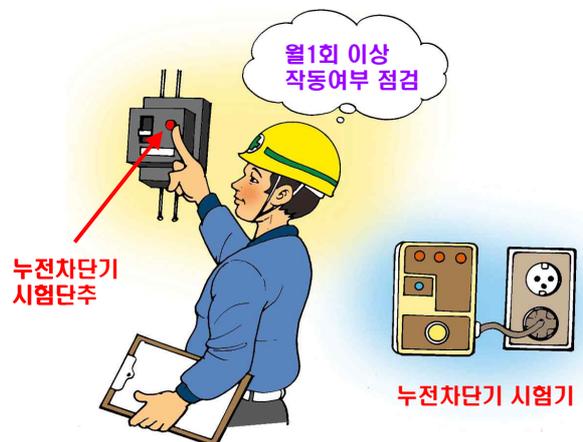
일단 충전부와 대지사이에 누전 경로가 형성되면 그 누설전류로 인해 열이 발생하여 절연물이 국부적으로 파괴되어 이로 인해 누전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이는 더욱 누설전류를 크게하여 발열량을 누적시킴으로써 결국 점화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1) 발생 원인

- 전기배선이나 전기기기 내부회로 절연불량으로 전류가 통전 경로를 통하지 않고 건물이나 주변의 부대설비 등을 통해 흐르는 경우, 접속저항이 큰 부위에 국부적으로 발열
- 카본, 쇳가루 등과 같은 도전성 먼지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전기기기 설치 시 기기 내부의 충전부에 도전성 먼지나 습기가 침입하여 절연능력이 저하되어 누설전류 발생
- 옥내 배선 및 배선기구 절연체의 노화

(2) 예방 대책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기적으로 동작시험
- 정기적 부하회로의 절연저항 측정 및 관리
- 부하의 차단 곤란 시 누설전류를 측정 및 기록 관리하고, 이상 발견 시 신속히 보수
- 전기기기는 습기나 도전성 먼지가 침입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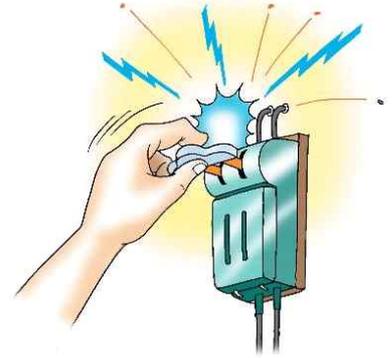


마. 전기 아크

개폐기로 전기회로를 개폐할 때나 퓨즈가 용단될 때에는 아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회로를 닫을 때 보다는 끊을 때 교류보다는 직류인 경우에 더욱 심하고 아크도 연속되기 쉽다.

(1) 발생 원인

- 전자식개폐기나 스위치로 전기회로를 끊거나 닫는 경우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발생, 이때 가까이에 가연성 증기나 먼지 등이 있을 경우 인화하여 출화 또는 폭발



(2) 예방 대책

- 가연성증기나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기 사용
- 가연성 증기나 먼지를 취급하는 장소에 인접한 전기실 또는 제어반에는 양압 유지 및 인접한 배관, 덕트 등을 밀폐
- 차단기, 스위치 및 전자개폐기 주변에는 가연성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



바. 전기 열화

배선 또는 기구의 절연체는 그 대부분이 유기질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기질은 장시간 경과할 경우 열화되어 절연저항이 저하된다. 특히 유기질 절연체는 공기의 유통이 불량한 곳에서 고온상태로 가열될 경우 탄화 과정을 거쳐 도전성을 띠게 되며 여기에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류로 인한 발열로 탄화 현상이 더욱 촉진되고 결국 유기질 자체가 타거나 인근 가연물에 착화되는데 이를 절연열화에 의한 탄화현상 이라 한다.

사. 접속부 과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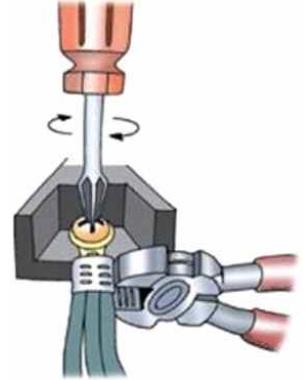
전선과 전선 전선과 단자 또는 접속편 등의 도체에 있어서 접촉이 불안정한 상태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접촉저항에 의하여 접속부가 발열하게 되며 이는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국부적 발열부분(접촉부)은 열팽창 및 수축이 반복되면서 전기적으로 아산화동(산화제1철)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발열부는 더욱 거칠어져 접촉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열상태에 이르게 되어 결국 주위의 절연물을 발화시키게 된다.



(1) 발생 원인

- 전선 접촉점의 볼트 조임이 풀리거나 접속이 불량할 경우 저항이 생겨 열이 발생, 이열이 주변의 가연성 먼지나 물질에 전달되어 화재 발생
- 콘센트와 플러그를 연결하는 칼받이가 견고히 접속되지 않을 경우 접촉저항에 의한 열이 발생
- 차단기와 전선 및 부스의 접속용 볼트가 풀리거나, 견고히 조여지지 않을 경우 접촉 저항에 의한 발열로 과열

**(2) 예방 대책**

- 터미널단자는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접속부 볼트 풀림 및 발열 유무 정기 점검
- 콘센트, 차단기 등의 접속부 주변에 가연물 방치 금지
- 노화된 배선기구 및 배선은 방치하지 않고 교체

아. 정전기**(1) 발생 원인**

- 물질의 마찰 등에 의해 발생한 정전 스파크가 가연성 가스 및 증기에 인화

- ▷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발생 총족 조건
 - 가연성 분진, 가스 및 증기의 농도가 폭발한계 내에 있을 것
 - 정전 스파크의 에너지가 가연성 분진, 가스 및 증기의 최소 착화에너지 이상일 것

**(2) 예방 대책**

- 제전복 및 제전화 착용하고, 바닥선은 도전성 타일이나 도료로 시공
- 정전기를 일으키는 생산공정이나 운송부에는 제전기 사용
- 상대습도를 높여 정전기 발생 억제
- 유체 이송에 사용되는 탱크로리, 배관 및 배관의 접속부 등은 본딩용 접지 실시
- 위험물 보관 탱크, 드럼통 등에는 질소가스 같은 불활성 가스 주입
- 불활성하기 어려운 탱크, 드럼통 등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배관은 관내 유속을 규정치 이하로 낮추어 주입
- 위험물이 주입된 후 규정시간 이상 정차시켜 대전량이 안전 한계치까지 소멸시킴
- 스페너, 드라이버, 망치 등과 같은 수공구는 타격에 의한 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폭 공구 사용
- 국부환기를 통한 가연성 분진, 가스 및 증기의 농도를 폭발한계 이하로 유지
- 가연성 분진, 가스 및 증기가 존재하는 공간과 정전기 발생 우려 공간 사이를 차폐

8. 사망재해 획기적 감소를 위한 High-Five운동

가. 전기취급작업 사망재해 통계

사업장에서 전기 감전 재해로, 2012년 30명(부상412명), 2013년 37명(부상394명), 2014년 27명(부상330명), 2015년 19명(부상329명), 2016년 26명(부상 351명), 2018년 18명(부상 385명)이 전기 취급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하였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

나. 전기 취급작업시 위험포인트 및 안전대책

▣ 위험 포인트

- ▶ 노출된 충전부 접촉 또는 고장난 기계 수리·보수 시 감전위험
- ▶ 휴대형 및 이동형 전기기기 등 취급작업 시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
- ▶ 변전실내 충전부 근접장소에서 청소, 도색, 계기취급 작업 시 전기화상. 감전위험
- ▶ 송·배전선로 근접장소에서 크레인 등 사용작업 시 감전위험
- ▶ 정전작업 중 정전작업구간 및 작업시간 혼돈, 역송전에 의한 감전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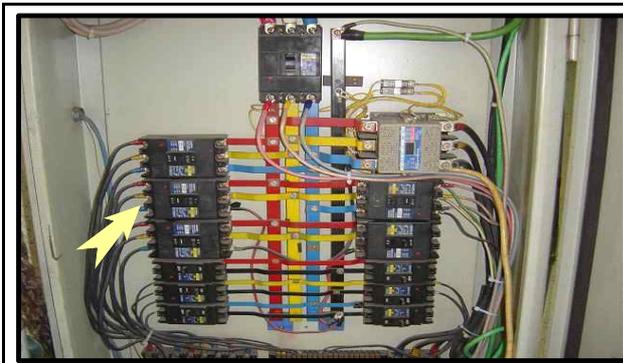
▣ 안전대책

항 목	세 부 조 치 내 역
1. 충전부 방호	① 노출 충전부 방호조치(노출된 분전함 충전부 아크릴판 등으로 밀폐)
2. 접지 또는 누전차단기 설치	① 전기기계·기구 외함에 접지 ② 누전차단기 설치·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 ③ 휴대형은 이중절연기기 사용(권장)
3. 변전실내 충전부 접근 한계거리 준수	① 특별고압 구간과 저압구간 구분표시 ②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한계거리 표지판 부착
4. 절연방호구 설치	① 작업구간 인접 충전전로에 절연방호구 설치
5. 정전작업 시 안전조치	① 정전작업시간 준수 ② 검전기 착용 ③ 정전작업구간에 역송전 방지를 위한 단락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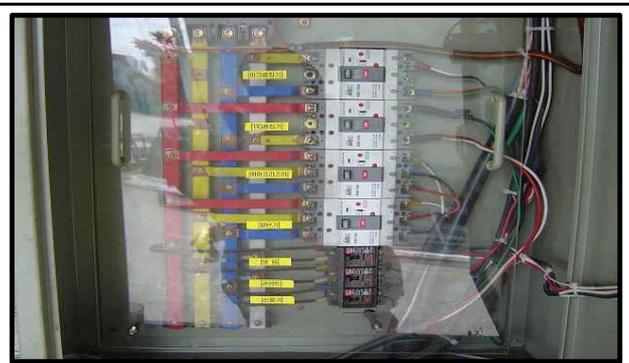
▣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발생 형태	사업주(관리감독자) 조치사항	준수사항
감전재해예방	① 노출충전부 절연처리 또는 덮개 설치 ② 전기기계·기구 외함접지 ③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 전원에 누전차단기설치 ④ 휴대형은 이중절연기기 사용(권장) ⑤ 변전실내 특별고압 구간과 저압구간 구분표시 ⑥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한계거리 표지판 부착 ⑦ 작업구간 인접 충전전로에 절연방호구 설치 및 정전작업구간 단락접지기구에 의한 단락접지	① 변전실내 점검·보수작업시 접근한계 거리 이내 접근금지 ② 정전작업시간 준수 ③ 정전작업시 검전기 착용

▣ 전기 취급작업



충전부 노출 ×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



전기기계기구 구동모터 접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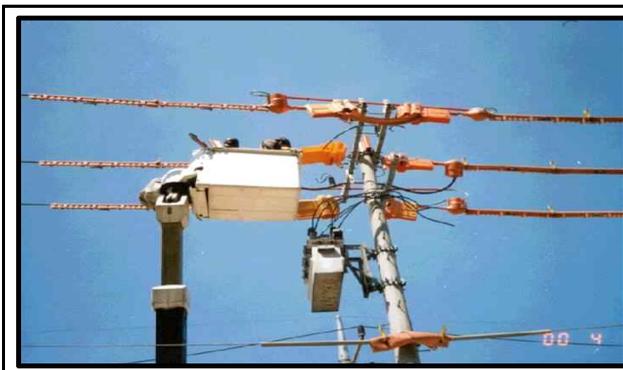
코드릴에 누전차단기 설치 ○



이중절연구조의 휴대용연삭기 ○



특고압 접근한계거리 표지판 ○



작업구간 인접충전선로에 절연방호구 설치 ○



절연방호구 종류 ○



작업 전 안전점검 전기기계기구

설비별



작업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2015 - 교육미디어 - 725

전기기계·기구라 함은 전기설비의 일부로 사용되거나 전기설비에 접속되는 피팅, 전기기구, 조명기구 등을 총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주요 유해·위험 요인으로는,

- 전기기계기구의 전기충전 노출부 접촉에 의한 감전
- 전기기계기구 절연파괴로 전기누전에 의한 감전
- 전기기계기구 외함 미접지로 인한 감전 위험 등이 있다.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충분히 절연조치가 되어있는가?		
누전으로 인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접지 및 누전차단기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정비·수리 등 작업 시 전원 차단 등의 안전작업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잠금장치, 꼬리표 등)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가?		
상기에 해당되는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을 하는 경우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가?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위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사용하는가?		
노출되어 있는 충전부에 작업자의 신체가 직접 접촉될 위험은 없는가?		
전기설비 자체 금속제 외함에 접지가 되어 있는가?		
전기기계기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작업자가 수분이 많은 젖은 손으로 충전부를 조작하지는 않는가?		
전기기계기구의 전선피복 절연상태는 양호한가?		
전원연결 플러그 사용 시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전기기계기구 내부 절연 파괴 시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상 작동하는가?		
충전부 임의 조작 금지를 위한 시건장치는 되어 있는가?		
개폐기 취급 시 오조작 방지를 위하여 회로명은 표기 되어 있는가?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고 있는가?		
충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기구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공간이 확보되었는가?		

※ 본 점검항목은 참고용으로 사업장 특성(아차사고, 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체적인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Safety Point

전기 사용에 따른 안전 수칙

☑ 일반사항

- 전기 스위치 부근에 인화성, 가연성 물질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 스위치함(분전반)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을 보관해서는 안된다.
- 모든 스위치는 사용처,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 전기 수리 또는 점검할 때에는 “수리중”, “점검중” 표시를 하고 관계자 이외는 출입금지를 시켜야 한다.
- 모든 전기기계·기구에는 접지는 올바른 것을 확실하게 접속해야 한다.
- 스위치, 배전반, 전동기 등 전기기계·기구에 가연성 물질이 닿지 않도록 한다.
- 스위치 개폐는 접속 부분의 안전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접속한 다음 개폐해야 한다.
- 허가없이 임의로 전기 배선을 접속 사용하지 않는다.
- 결함이 있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전기기계·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 전원으로부터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선을 잡아 당기지 말고 플러그 전체를 잡아 당겨야 한다.

☑ 전기기계·기구의 일상 점검 요령

- 습기나 물기가 많은 곳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손과 발에 물기가 없어야 한다.
- 전기기계·기구 사용을 위한 코드나 배선 기구는 용량과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 예방의 기본 장치인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시험 버튼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이상이 감지된 전기기계·기구는 누전, 합선, 감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개/보수하여 사용한다.
- 무자격자에게 전기 설비의 개/보수를 의뢰하는 경우 더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자(전기담당)에 의뢰한다.



☑ 전기 안전 작업 요령

- 장비를 점검하기 전에 전원 차단, 플러그가 있는 장비는 플러그를 뽑는다.
- 전원차단 시 가급적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오른손을 사용하여 얼굴을 스위치 상자로 향하지 않게 하고 손잡이를 내린다.
- 전기 설비를 작업할 때 공구나 비품의 손잡이는 절연체로 된 것을 사용한다.
-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 전기가 흐르는 부분은 절연을 한다.
- 전원에 연결된 회로배선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 작업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회로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플러그를 전원에 꼽지 않는다.
-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회로에 접촉하면 안된다.
- 전기 설비에 연결된 접지선의 접속을 확인한다.
- 전원 연장선은 최소한으로 가능한 짧게 사용한다.
- 전기 설비 근처에서는 가연성 용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분전반의 진입로와 스위치 앞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의 습관화 / 실천문화 조성

- 사 업 주 작업 전 안전점검 문화 조성 및 지원
- 근 로 자 수행 작업의 위험요인 파악, 보고 및 대응
-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의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기억하세요!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1.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 설비 등)
2.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3.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절차 제정, 준수)
4.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선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바로알기

LOTO(잠금장치, 표지판)란?

"Lock-Out, Tag-Out"의 줄임말로,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LOTO 작업절차가 왜 필요한가?

- ▶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불시가동 등으로 인해 매년 40여명이 사망하고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LOTO(Lock-out, Tag-out) 작업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LOTO 작업절차가 필요한 작업은?

- ▶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을 하는 경우
 - ▶ 기계·설비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일시 중지하는 작업
 - ▶ 기계·설비의 작동 중 위험한 지역내 또는 기계 등의 작동부 부근에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접근하는 작업
 - ▶ 정비 등 작업 시 오조작으로 인한 불시가동의 위험이 있는 작업

LOTO 종류

▶ 잠금장치

전기 에너지 통제



유입/공압/스팀 등 에너지 통제



자물쇠 및 걸쇠



▶ 표지판



※ 본 제품 사진은 안전보건공단과 무관

LOTO 작업절차

- 1 **전원차단 준비** : 작업 전 관련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 공지
- 2 **기계설비 운전 정지** :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기계·설비 운전 정지
- 3 **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 기계·설비의 주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잔류에너지 여부 확인
- 4 **LOTO 설치** :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후 담당작업자가 개별 열쇠보관
- 5 **작업실시** : 기계·설비 정지 확인 후 정비, 청소, 수리 등 작업 실시
- 6 **점검 및 확인** : 기계·설비 주변 상태 및 관련 작업자 안전확인
- 7 **LOTO 해제** : 담당작업자가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 8 **기계 설비 재가동** : 종료 후 관련 작업자에게 해당 내용 공지

LOTO 점검 체크리스트



사업장명	
부 서	
장 소	
설 비 명	

평가 항목		예	아니오
1	기계·설비별 LOTO 절차서가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2	LOTO 절차서에 대한 작업자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3	해당 기계·설비의 잠겨야 할 위험 에너지원에 대해 작업자는 알고 있는가?		
4	LOTO 작업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들에게 공지하였는가?		
5	LOTO 사용시 기계·설비별로 정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였는가?		
6	작업자는 기계·설비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LOTO 작업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7	LOTO를 해제하기 전 작업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가? 7-1. 기계·설비를 검사하여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였는가? 7-2. 다른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8	모든 작업자들에게 LOTO 장치가 제거되었음을 공지하였는가?		

기타 준수사항

- 기계·설비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 수리, 교체하는 경우 작업자가 에너지 차단장치를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는가? 예 아니오

- LOTO 작업절차 수행 중 근무교대 등으로 작업자 변경 시 교대자가 먼저 자물쇠를 체결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에너지 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작업자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지판(Tag Out)을 단단히 고정하여 "통제중인 기계장치를 작동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제2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

1. 직장내 성희롱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과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 2

2.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다.

(1)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시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출장 중인 차안,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장소, 야유회장소, 업무협의를 위해 불러내어 밖에서 만난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된다.

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한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언어나 행동을 말한다.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즉,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직장 내 성희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또는 행위자가 고위직급이거나 피해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그 행위의 정도나 양태,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원치 않는 행위로 인정되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즉, 상급자·하급자 간이나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직장 내 성희롱 과 같이 피해자와 행위자의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경우 성적 언동 등을 직접적,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의 주요 특징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이어야 한다.

(1) "성적" 언동이나 그밖의 요구는 성적인(sexual)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여성 직원을 "아줌마" 라고 부르거나 반말을 하는 것과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행동, 여성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과 같이 고정관념적인 성별 역할을 강요하는 행동은 성차별적인 행동으로서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언동 자체가 "성적"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3) 성적 언동이 단 1회 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4)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이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된다.

라.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러한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과 무관하다.

마.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가가 성립요건이나, 이는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누구의 관점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판결). 즉,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2)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 이다.

(3)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즉,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직장 내 성희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또는 행위자가 고위직급이거나 피해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피해자보다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조건이어서, 또는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그 행위가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원치 않는 행위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보다는 앞서 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적 맥락과 경위, 그 행위의 정도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원치 않는 행위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4)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 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5) 즉,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직급, 고용형태, 연령, 성별, 근속기간 등에 있어 피해자와 행위자의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경우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직접적,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의 주요 특징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이러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바. 직장 내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와 기타 행위로 분류 할 수 있다.

(1) 육체적 성희롱 행위

육체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다.

-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육체적 성희롱 행위 예시

-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행위
- 블루스를 추자며 어깨, 허리, 등을 접촉하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를 해달라고 강요하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 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하거나 얼굴을 지나치게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업무 과정에서 격려를 한다는 핑계로 머리카락이나 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 손금을 봐준다면서 손을 끌어당겨 손을 주물럭거리거나 손가락지를 끼는 행위
- 술에 취해서 부축해 준다며 과도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행위

-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문자, SNS, 메신저, 이메일 등 포함)
- ▶ 임신·출산·피임·생리현상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함의, 행위 묘사를 하는 행위
-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이야기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 회식자리 등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서비스 제공자로 대하는 언동



언어적 성희롱 행위 예시

- “딱 붙은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난다.”
-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똥똥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술집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 “아가씨 엉덩이라 탕탕하네.”
- “몸매 진짜 좋다. 누가 보면 처녀인 줄 알겠어.”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 “너 예전 사진 보니, 운동 좀 해야겠어. 언제 저런 엉덩이 다시 볼 수 있는 거야?”
-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
-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 또는 성정체성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
- “어제 또 야동 봤지?”
- “○○씨랑 사귀다면서? 어디까지 갔어?”
- “오늘 치마 입고 왔네? 남친 이랑 어디 가니? 불금이라고 오늘 외박해?”
- “요즘 왜 이렇게 살쨍어? 그래가지고 남친이 성적 매력을 느끼기나 하겠어?”
-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성적 요구하는 행위
- “우리 ○○씨~ 우리 이쁜이~ 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 “너 정말 이쁘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이쁘다. 우리 사랑할래?”
- “카톡 프로필 사진 정말 이쁘다. 설레인다.”
- “술 먹고 같이 자자.”
-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 갈 필요가 없어.”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사생활이나 성적인 내용에 관한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3) 시각적 성희롱 행위

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다.

- ▶ 음란한 사진·그림·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전화, 문자, SNS, 팩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그림 좋지?



시각적 성희롱 행위 예시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것
-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빤히 쳐다보는 것

(4) 기타 성희롱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3.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와 조치

기업문화 및 조직 분위기는 최고 경영층(경영자, 임원 등)의 의식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 경영층이 직장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 사업주 의무

(1)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과정보양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이하 "법률"이라 한다)

(2)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은 사용자사업주가 실시한다.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의무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게시 의무(시행령 제13조 제3항)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게시 의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분쟁의 자율적 해결 참조).

(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방법(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① 연 1회 이상, 전체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1시간 이상 실시 권고).

② 직원 또는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 실시 가능

- 내부 직원 또는 외부 강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강사는 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 교육을 수료한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 직원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 잘못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한 교육 실시 가능

-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문서 및 교재만 회람하는 경우와 같이 수강자가 교육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육한 경우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인터넷을 통한 교육 실시 가능

- 인터넷을 통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 단순히 이메일로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판에 공지한 경우와 같이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⑤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가능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전문강사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 위탁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가 진행하므로, 교육의 확보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육전담자가 없는 사업장의 예방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장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 등에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사적으로 통일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에 직장 내 성희롱 내용,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⑥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교육 완화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 4항)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 의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률 제14조 1항)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 견책, 감봉, 전직,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률 제14조 2항)

(다) 직장내 성희롱 처리 방침 명문화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에 대한 의지와 향후 처리방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벌칙,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회사방침을 인사규정·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①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소속직원이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성희롱 상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성희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성희롱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 및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설문조사시 그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경험의 유무 및 구체적인 실태, 남녀간 성의식, 기업내의 성문화,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 등을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예방대책 등 의식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률 제14조의 2 제1항)

4.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

직장에서 남녀근로자는 누구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혹은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도 행위자도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가 앞서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되었거나 행위자로 지목 되었다면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1)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
- (2)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 (3) 회사의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 (4) 성희롱을 당한 동료와 공동으로 대응한다.
- (5)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 대책의 마련을 촉구한다.
- (6) 업무시간외 원하지 않는 만남을 회피한다.

▷ 성희롱 피해자가 되었을 때 대처 방안

(1)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전달한다.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편지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3) 주변에 도움을 요청 한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또는 회사의 성희롱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4) 사내 고충처리 위원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성희롱 행위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내의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구와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 한다.

(5)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한다.

회사에 상담하고 고충을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간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 평등 상담실」 등과 같은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나.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 (1) 음담패설을 삼가고 직장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을 붙이지 않는다.
- (2)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3)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중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4)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 (5)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 (1) 즉각 사과한다.

자신의 의도가 어떠한지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각 사과한다.

- (2)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한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내용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근로자의 고충 처리 절차

(1) 성희롱 접수

- ▶ 회사 내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고충처리기구의 담당자(남녀 각 1인 이상)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인사 부서·노무담당 부서에서 한다.
- ▶ 접수는 피해자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예 : 무인응답기, 신고 전용전화), 사내통신망(예 : 전담 TELEPIA I.D.), 인터넷 메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경우 벌금 200만원)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2) 상담과 조사

- ▶ 사건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 피해자, 성희롱 용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기록한다.
- ▶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는 양자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로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희롱 용의자와의 대질조사를 지양하고 참고인 및 증인의 증언을 들어서 처리할 수 있다.
- ▶ 피해자와 증인을 성희롱 용의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 조사된 결과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면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3) 사실확인 및 징계조치

- ▶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경고, 견책, 전직, 대기발령,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경고 등 가벼운 징계는 성희롱 행위를 근절시킬 확고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성희롱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 ▶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

**(4) 결과통지 및 사후 재발 방지**

- ▶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야 하며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후에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법**(1) 지방 노동관서를 통한 구제 신청**

피해자 또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예방교육 의무, 행위자 조치 의무,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고소, 고발(공소시효 기간 5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가능하며 피해 당사자 이외에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진정, 고발이 가능하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이하)

마.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노력

(1) 직장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선언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는 직장내 성희롱이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선언하고, 고충의 접수 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방지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선언은 모든 조합원(근로자)이 성희롱 및 기타 성적으로 불쾌한 느낌을 받지 않는 직장문화에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 조합원(근로자)들에게 성희롱 방지를 위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상담창구의 개설

직장내 성희롱을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조합원(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반영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는 성희롱과 관련된 사내의 고충처리절차,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조합원(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협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성희롱 고충처리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참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 하여 사전에 사업주와 교육 방법, 시간, 횟수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에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바. 직장 내 성희롱의 「2차 피해」의 의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한번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뿐 아니라 이를 쉽게 거부하지 못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이 지속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거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 또는 감수한다는 것에 대한 주변의 평판 악화와 소문 등으로 인한 총체적인 근로환경 악화를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문제제기했을 때에는 행위자, 제3자, 회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분쟁의 각 단계별로 재차 가해를 당하게 된다.

(1)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주요 내용 (2018.5.29.시행 법률)

개정 법률은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피해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반드시 조사, 처리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은폐되고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 뿐 아니라 누구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

② 회사는 신고되거나 인지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에 대해 지체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조사 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 ④ 조사자, 보고 받는 자, 조사과정 참여자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관련자와 사건 관련자 모두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⑤ 조사기간 동안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제는 피해자가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기간 자리를 비우는 동안 행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 피해자에게 더 안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잘못을 한 것이 없는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신고 접수시 피해자에 대한 조치보다 조사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행위자를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혐의자에 대해 조사기간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한다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 ⑥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회사는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권리 회복을 위한 다양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 ⑦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시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사업주는 신고자, 피해주장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5. 사업주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가. 사업주 의무 내용



나. 위반 시 제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8. 5.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사업주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2)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나. 사업주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2	500만원
다. 사업주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3	500만원
라. 사업주가 법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4	500만원
마. 사업주가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5	500만원
바. 사업주가 법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6	500만원
사. 사업주가 법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7	500만원

아. 사업주가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2	300만원
자. 사업주가 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2호	500만원
차. 사업주가 법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3항 제2호	300만원
카. 사업주가 법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 제3항 제3호	300만원
타. 사업주가 법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9조 제3항 제4호	300만원
파. 사업주가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3항 제5호	200만원
하. 사업주가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3호	500만원
거. 사업주가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3호의2	500만원
너. 사업주가 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6호	500만원
더. 사업주가 법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았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4호	400만원
러. 사업주가 법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5호	400만원
머.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7호	500만원
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 제3항 제6호	200만원
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 제3항 제7호	200만원
어. 사업주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3항 제8호	2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단,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2018. 6.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조직 구성원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지식, 태도,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진단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율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개발하였습니다.

가. 직장 내 성희롱 판단력 점검

어떠한 말과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제시문에 대한 답으로 그렇다/아니다 중 하나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그렇다	아니다
1. 직원들끼리 격려하거나 친밀감의 표시로 포옹하기, 어깨 토닥이기, 팔짱 끼기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2.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3. 회식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4. 단 한 번의 직장 내 성희롱은 실수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제기 할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5. 성적 농담에 나만 불쾌할 뿐이고 다른 동료들은 모두 즐거워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6. 동성 간의 음담패설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7. 직장 동료에게 연예인이나 고객 등에 대한 성적 농담이나 외모의 성적 비유(평가)를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8. 상대방이 원치 않는 구애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9. 회식장 내 개인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선정적인 연예인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10.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성적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11. 가해자의 성적 언동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12. 성적 소문을 동료들에게 전달한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13. 성적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14.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도 회사 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15. 상사가 반말로 업무를 지시하여 불쾌하게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16. 회식이나 회의 등에서 잘 어울려 보이는 남녀직원에게 사귀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17. 욕설이 특정성을 비하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18.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19.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도 참여할 의무가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20. 형법상 처벌되는 직장 내 성폭력은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 직장 내 성희롱 판단력 점검 결과보기

귀하는 몇 개를 맞추셨는지요? 아래는 문항별 판단과 설명입니다.

- ◎ 정답 18개 이상인 경우 : GREAT ⇒ 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 ◎ 정답 15개~17개인 경우 : GOOD ⇒ 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합니다.
- ◎ 정답 14개 이하인 경우 : BAD ⇒ 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올바른 판단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나. 성인지 감수성 점검

귀하와 귀하의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 및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성향을 점검하기 위한 문항이며 각 제시문에 대한 답으로 5개 선택항목 중 하나(평소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그렇다 (1)	그렇다 (2)	보통(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5)
1. 나는 평상시 직원들의 외모나 옷차림새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는 편이다.					
2. 술자리에서 가끔 성적 농담을 하는 직장 동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3. 사소한 성적언동까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직문화 를 경직되게 만든다.					
4. 나는 직장 내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문제제기 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 나서지 않는다.					
5. 나는 직원들과 격려나 친밀감의 표시로 신체적 접촉을 자주 하는 편이다.					
6.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성동료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에 많이 노출될 것 같다.					
7. 직장 내 성희롱은 대부분 피해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 하는 경우가 많다.					
8.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이 지나 치게 예민하거나 의사소통 기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9. 고객서비스 부서나 상담 부서의 경우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 여성 직원이 맡는 것이 더 적합하다.					
10. 나는 평상시 남자가~ 여자가~ 라는 말을 하는 자주하는 편이다.					
11. 나는 여성직원에게 결혼이나 출산계획에 대해 가끔 물어보는 편 이다.					
12. 직장에서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을 보면 승진을 포기한 사람이구 나! 라는 생각이 든다.					
14. 우리 회사는 복사, 회식장소 예약, 동료 생일 챙기기 등 비업무 적인 일은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					
15. 우리 회사는 직원 화합을 위한 행사에서 남녀를 구분 하여 참여하도록 기획한다.					
16. 나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직장 내 공식적, 비공식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					
17. 우리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당사자의 비밀 보호에 소홀하다.					
18. 평소 경영진과 관리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19. 우리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 것 같다.					
20. 우리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편이다.					

◆ 성인지 감수성 점검 결과 보기

문항 번호	범주	평 가
1번~8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대화 정도	이 문항의 평균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귀하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대하지 않는 개인과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9번~15번	성역할 고정관념	이 문항의 평균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귀하는 성역할 고정 관념 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할수록 성차별적, 성희롱적 언동을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16번~20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도화 정도	이 문항의 평균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규율의 제도화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이 잘 제도화되어 있을수록 직장 내 성희롱 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희롱 고충처리 관련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부서장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대리인 <small>※ 대리인 신청 시</small>	성명		성별	
		소속		직급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상 담 (신 청) 내 용	<p>※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p>				
요구사항 <small>※ 조사를 원하는 경우</small>	1. 성희롱의 중지()		2. 공개 사과()		
	3. 징계 등 인사 조치()		4. 기타()		
처리결과					
※ 관련 자료 첨부					

성희롱 & 남녀 차별 없는 직장 문화가 경쟁력입니다 !

한국기술안전(주) 사업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장 안전점검 조치 등 사업주와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근로자등에 대한 재해예방에 관한 교육, 훈련 지도·조언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임위반시: 500만원이하과태료)

정부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직접 유자격 안전관리자 채용과 선임의 어려움 및 경영상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업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인 한국기술안전(주)에서는 안전관리업무위탁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사업장방문 안전점검 실시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상, 보건상 조치
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와 기술지도로 위험요인 제거				
안전·보건교육 훈련실시	☞	신규채용자·일반근로자	및	그 밖의 회사와 협의 교육
을 통한 재해예방 지식·기능·태도를 개선 안전작업유도				
안전기술자료 무료제공	☞	매월안전교육교재제공	및	각종 안전기술자료 제공
을 통한 위험관리 모델기법보급과 저비용·고효율 산재 예방기법 보급				
각종 홍보자료 무료 보급	☞	정부정책자료 보급	및	안전포스터·표어 보급
을 통한 고용노동부 최신정책과 무재해운동, CLEAN사업 등 우수안전장치, 보호장구 등 정보제공				
산재예방계획·재해처리지원	☞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및	산재원인분석·대책수립
을 통한 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원·작업환경개선업무지원 등 재해원인분석 대책조치로 근로자와 회사재산 보호				
노동행정 등 대관업무 지원	☞	고용노동부·안전공단 업무	및	인사·노무·소송관련등 조력

고용노동행정 관계서류 작성조력, 안전·보건관계 시설자금 무료지원·장기처리 용자안내신청외 산업재해관련 민·사상 업무 상담, 지도, 조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기술안전(주)

K T S KOREA TECHNOLOGY SAFETY CO., LTD.

(상담안내 : 전화 02-453-9461~2. 453-9466 / 팩스 02-453-9480)